

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[별표 2]

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(제3조 관련)

품목번호	품 명	세율 (%)
2401	잎담배와 담배 부산물	
ex 2401.10	잎담배 [주맥(主脈)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 - 오리엔트종(種) (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)	18
ex 2401.20	잎담배 [주맥(主脈)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] - 오리엔트종(種) (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)	18
ex 2401.30	담배 부산물 - 터키쉬타입의 것	18
2523	포틀랜드(Portland) 시멘트 · 알루미나(aluminous) 시멘트 · 슬래그(slag) 시멘트 · 슈퍼설페이트(super sulphate)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(水硬性) 시멘트 [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(clinker)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]	
2523.10	시멘트 클링커(clinker)	4.5
2523.2	포틀랜드(Portland) 시멘트	
2523.21	백색 시멘트 (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	8.1
2523.29	기타	8.1
2523.30	알루미나(aluminous) 시멘트	9.9
2523.90	그 밖의 수경성(水硬性) 시멘트	8.1
3004	의약품 [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(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) 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제3002호 · 제3005호 ·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]	
ex 3004.10	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 (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)를 함유한 것,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- 페니실린을 함유하는 것 - 스트렙토마이신을 함유하는 것	9.9 9.9
3208	페인트와 바니시 (varnish) [에나멜 · 래커(lacquer)를 포함하며,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(非水性) 매질(媒質)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],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	
ex 3208.90	기타 - 펄 에센스	9.9
9401	의자 (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	

9401.5	제외한다)와 그 부분품 등나무·버드나무 가지(osier)·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	
ex 9401.59	기타 - 등나무로 만든 것 --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	9.9
9403	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	
9403.8	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[등나무·버드나무 가지(osier)·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]	
ex 9403.89	기타 -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	9.9